

2021년도 제36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1. 12. 1.(수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위원 5명 참석
 - 심의위원: 최승수(분과위원장), 강태욱, 김경숙, 노정동, 박성호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1-350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강나래 전문위원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2,439건(안건번호 제2021-171426호~172784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1-171426호~171447호(순번 1번~22번)는 블로그 및 카페, ◇◇◇ ◇◇에서 다수의 불법복제물을 무단으로 전송한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1-171448호~171450호(순번 23번~25번)는 카페에서 다수의 게임 불법복제물을 무단으로 전송한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1-172774호~172784호(순번 1349번~1359번)는 원저작물의 특정 장면을 편집하여 이용한 것으로, 해당 회차의 주된 부분을 이용하고 있는 점, 이용 분량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해당 회차 전부를 제공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2,378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 주요내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미 접속차단의 시정요구를 한 해외 저작권 침해 사이트 5개의 대체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URL 정보 총 380개의 URL 정보에 관한 '구글' 검색결과 제한 협조 요청 여부 (안건번호 제2021-18271호~18650호)

- 회의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속차단 조치한 해외 저작권 침해 사이트의 대체사이트 5개에 접속할 수 있는 380개의 URL 정보에 관해 검색결과 제한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가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최승수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 제36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1-350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최승수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강나래 전문위원: 제1호 안건 회의록과 관련하여 6쪽의 카테고리명, 게시물명, 8쪽의 제작사명 등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비식별 처리 대상으로 보이는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해 두었음.
- B 위원: 제1호 안건의 해당 부분은 비식별 처리함이 타당함. 나머지 부분은 전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D, C, A, E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강나래 전문위원: 제2호 안건 회의록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 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전체 비공개하고 쪽수만 기재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음.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

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카테고리명, 게시물명, 제작사명 등은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모바일 앱 불법성 심의 회의 부분인 13쪽~18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비공개함.

3. 안전상정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강나래 전문위원: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른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최승수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나래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45개 온라인서비스의 이용자들이 게시한 2,439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번~22번은 2명의 민원인이 실명으로 신고한 건임. 블로그 및 카페, ◇◇◇ ◇◇에서 다수의 일본 애니메이션을 각 제공 중인 사안임. 총 47개 게시물임.
(순번 18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해당 저작물의 1기 21화 전체 분량을 우리말 자막과 함께 제공하고 있음.

(순번 22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해당 저작물의 시즌 2 10화 전체 분량을 우리말 자막과 함께 제공하고 있음. 각 심의대상 게시물의 불법복제물 복제·전송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상당한 점을 고려하여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시정권고의 요건이 충족되었으므로 가결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번~22번은 게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강나래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23번~25번은 실명의 민원인이 국민신문고로 신고한 건임. 카페에서 게임 불법복제물을 각 제공 중인 사안임. 총 3개 게시물임. 민원인의 신고 내용은 검토보고서에 정리해 두었음. 일명 '고전 게임'으로 불리는 특정 유형의 게임을 복제·전송하는 카페인 것으로 보임. 심의대상 게시물 역시 해당 장르의 게임의 불법복제물을 전송 중임.
(순번 23번 채증 자료, 합법 시장 내 저작물 현황 등을 순차적으로 보여주면서)심의대상 게시물은 ◇◇◇◇. ◇◇. ◇◇에 출시한 PC 게임을 압축 파일 형태로 전송하고 있음. 게임 소프트웨어 유통 사이트인 '스팀'에서 10,500원에 판매 중임.

(순번 25번 채증 자료를 보여주면서)심의대상 게시물에서 제공 중인 저작물은 2004년에 출시된 고전 게임으로, 발매 당시 국내에 정식 수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특이점이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을 고려하면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C 위원: 순번 25번은 국내 미발매된 저작물인지?
- 강나래 전문위원: 해당 게임은 일본에서 제작된 것으로, 발매 당시 국내 정식 수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합법 시장에서 한글화된 버전은 존재하지 않음. 다만 일본 합법 시장에서 해당 게임을 구매하여 다운로드한 후 국내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하여 한글 패치를 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음.
- A 위원: 순번 25번의 저작물이 국내에서 정식으로 유통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외 사이트에서 해당 저작물을 구매할 수 있는지?
- 강나래 전문위원: 고전 게임의 특성상 유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해외 사이트를 통하여 구매할 수 있는 사실은 확인함.

- E 위원: 저작물의 최초 출시연도가 아니라, 현 시점에서 합법 시장을 통한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주목해야 함.
- D 위원: 해당 저작물은 CD KEY가 있어야만 이용 가능한 게임인지?
- 강나래 전문위원: CD KEY 등 별도의 기술적 보호조치 없이 CD 구입만으로 이용할 수 있음.
- E 위원: 카페에서 다수의 게임 불법복제물을 무단으로 전송한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여 가결함이 타당함.
- D, C, B, A 위원: 이견 없음.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23번~25번은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강나래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349번~1359번은 2명의 민원인이 실명으로 신고한 건임. 카페 및 블로그에서 다수의 일본 애니메이션(이하 '원저작물'이라고 통칭함)의 영상저작물 일부를 각각 제공 중인 사안임. 총 11개 게시물임. (합법 시장 내 원저작물 제공 현황을 보여주면서)원저작물은 왓차 등 OTT 서비스를 통해 국내 합법 시장에서 제공 중이며, 각 회차는 20분에서 30분 정도 분량임.

(순번 1349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해당 저작물 559화 중 약 13분 분량의 특정 기술 시연 장면을 편집하여 전송하고 있음.

(순번 1357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해당 저작물의 특정 인물 출연 장면을 약 12분 편집하여 전송하고 있음.

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원저작물 중 특정 인물의 전투 장면, 캐릭터 정체성이 나타나는 장면 등 특정 주제의 장면을 편집하여 이용 중임. 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원저작물을 편집하여 게시하였으나, 원저작물의 일부를 단순히 잘라내어 이용하고 있을 뿐 새로운 창작성이 더해졌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으므로, 원저작물을 복제·전송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따라서 권리자의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 중이라고 할 것임.

다만, 이 경우에도 저작권법 제35조의5 공정이용 해당 여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이 합법 시장에서 유료로 제공 중인 영상물을 제공 중인 점은 공정이용 판단의 소극적 요소로 인정됨. 그러나 심의대상 게시물 및 블로그에서 불법복제물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고, 심의대상 게시물과 같은 형태의 저작물 이용이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불분명하다고 할 것임.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심의대상 게시물의 저작물 이용을 공정이용으로 볼 여지를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임.

종합하면, 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원저작물의 특정 장면을 편집하여 비영리적 목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공정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시정권고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시정권고 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한 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A 위원: 검토보고서에서는 심의대상 게시물의 저작물 이용형태를 '편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음. 해당 저작물의 여러 회차에서 특정 인물의 출연 장면을 모아 제공한 것이 아니라, 한 회차 내에서 특정 인물의 출연 장면만을 잘라 제공하였다는 의미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같은 취지가 맞는지?
- 강나래 전문위원: (순번 1349번 심의대상 게시물을 보여주면서)그러함. 심의대상 게시물은 해당 저작물의 559화 중 '◇◇◇◇'라는 기술을 사용 중인 장면만 편집하여 제공하고 있음. 원저작물의 전체 분량인 약 23분 중 13분 31초를 이용 중임.
- A 위원: 순번 1번~16번의 경우,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전송하는 분량이 최소 10분 32초에서 최대 15분 1초임. 본 안전의 경우, 전송 분량이 최소 10분 4초에서 최대 17분 20초로, 본 안전과 순번 1번~16번과의 전송 분량만 보면 큰 차이점은 없어 보임.
다만, 순번 1번~16번의 경우, 게시자가 특정 회차의 전반부 혹은 후반부 일부를 제공하고 있는 반면, 본 안전의 경우 특정 회차의 특정 인물 출연 장면만 잘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강나래 전문위원: 지난주 우리 분과위원회에서는 특정 인물의 출연

장면 등을 중심으로 하여 영상물의 일부를 이용 중인 사안에 대하여, 공정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이유로 부결한 바 있음. 이번 사안의 경우에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주목하여 부결로 검토하였음.

- A 위원: 지난주 부결 안건의 경우 분량은 어떻게 되는지?
- 강나래 전문위원: 지난주 안건은 약 4분 내지 5분 분량을 이용한 것으로, 이용 분량과 관련해서는 이번 안건과 차이점이 있음. 이 점에 주목한다면 다른 결론을 내려 주실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됨. 2021. 11. 30.에 개최한 제2분과위원회에서도 본 안건과 유사한 안건을 심의하였음. 당시 불법복제물을 전송 중인 사실이 분명함에도 일부 분량을 이용 중인 점을 들어 부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보아가결하였음.
- A 위원: 당시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의 불법복제물 이용 분량은 어떻게 되는지?
- 강나래 전문위원: 약 15분으로, 순번 1349번~1359번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제공하는 분량과 유사함.
- E 위원: 지난주 제3분과위원회에서 당시 안건과 같은 이용형태에 대하여 무조건 부결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이 아님.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이용 중인 불법복제물의 분량을 판단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영상 저작물의 '편집'에 대하여 편집자의 소재 선택과 배열에 대해 창작성을 인정할 것인가를 판단해야 함. 이번 안건의 경우 특정 등장인물

의 장면만 단순히 모아 놓은 것으로, 우리 저작권법에서 요구하는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의문임.

- B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제공하는 영상만으로 전체 줄거리를 이해할 수 있는지?
- 강나래 전문위원: 사안마다 다를 것이나, 해당 애니메이션의 경우 특정 인물의 전투 장면이 한 회의 전체 내용인 경우가 다수이므로 15 분가량의 전체 전투 장면을 모두 제공한다면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임.
- A 위원: 특정 회차 중 특정 등장인물의 출연 장면만 모아 제공하고 있지만, 해당 회차의 주된 부분을 이용하고 있어 그 실질은 해당 회차 전부를 이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D 위원: 동의함. 심의대상 게시물과 같은 이용형태가 원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사료됨. 가결 의견임.
- E 위원: 원저작물의 특정 장면을 편집하여 비영리적 목적으로 이용한 것이나 분량이 상당하고 편집에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가결함이 타당함.
- C, B 위원: 동의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349번~1359번은 게시물에 대

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강나래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순번 26번~1348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임. 총 게시물 수는 2,378개임. 심의대상 게시물 모두 불법 복제한 영화, 방송, 음악, 게임, 만화, SW, 출판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람. (음악 'Favorite'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640번은 웹하드 사이트에서 음악 'Favorite'를 50 포인트에 판매 중인 사안임. 2021. 10. 25. 발매된 'Favorite-The 3rd Album Repackage' 앨범을 알집 파일로 제공하고 있음. 멜론, 네이버 바이브(VIBE) 등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유료로 이용 가능함.

(게임 '아이돌마스터 스타릿 시즌'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106번은 웹하드 사이트에서 게임 '아이돌마스터 스타릿 시즌'을 1,390 포인트에 판매 중인 사안임. 해당 저작물은 2021. 10. 14.에 발매한 콘솔 게임으로, 게임 소프트웨어 유통 사이트인 스팀에서 64,800원 판매 중임.

(방송 '국민가수'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108번은 모바일 웹하드에서 방송 '국민가수'를 148 포인트에 판매 중인 사안임. 2021. 11. 18.에 방영한 7화의 전체 분량인 약 135분을 mp4 파일 다운로드 방식 및 스트리밍 방식으로 각각 제공하고 있음. 해당 방송은 TV 조선에서 2021. 10. 7.부터 현재 8화까지 방영 중이며, 권리자

홈페이지에서 유료 서비스 중임.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순번 26번~1348번은 모두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26번~1348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171426호~172784호(순번 1번~1359번)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제2호 안전에 관한 회의록은 14쪽부터 19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18271호~18650호(순번 1~380번)의 구글 검색 결과 제한을 가결함”

4. 폐회 선언

- 최승수 분과위원장이 제36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1년 제36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 12. 10.

분과위원장 최승수

위원 강태욱

위원 김경숙

위원 노정동

위원 박성호